

“이젠 탄소도 관세” EU CBAM, 철강 넘어 전 산업 뒤흔든다

[오피니언: EU]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내용과 전망 (13p)

[이주의 초점]

CBAM 수출 영향, 2031년 본격화... “지금이 대응
골든타임” (4p)

[통상 현안 체크]

중동 전쟁에 중소기업 더 흔들린다 “물류비 폭등·계약
취소 현실화” (10p)

[위클리 뉴스]

“전쟁 장기화”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나프타 수출통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3월 27일 시행’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최대 19.85%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6p)

[판례 동향]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30p)

[품목분류 동향]

개다래나무를 건조해 만든 물품의 조물재료 여부와
HS CODE (43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3월 30일(통권 제2172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CBAM 수출 영향, 2031년 본격화... “지금
대응 골든타임”

06 Weekly News

통상 현안 체크

- 10** 중동 전쟁에 중소기업 더 흔들린다
“물류비 폭등·계약 취소 현실화”

오피니언

- 13** 시선, EU 통관
김도연 KOTRA 브뤼셀무역관 과장
“이젠 탄소도 관세”
EU CBAM, 철강 넘어 전 산업 뒤흔든다

관세행정실무해설

- 21**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에 관한 문의
- 28** 질의응답사례
간접재료 부가가치기준 판정

판례동향

- 30** 관세판례해설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품목분류동향

- 43** 세번 바로잡기
개다래나무를 건조해 만든 고양이 장난감,
조물재료일까?
-

CBAM 수출 영향, 2031년 본격화... “지금이 대응 골든타임”

EU 수출물량 2034년까지 최대 17.9% 감소할 전망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으로 탄소 비용이 급증하면서 2031년부터 우리 기업의 EU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규제 대상 품목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단순한 대응을 넘어 공급망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월 23일 발표한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CBAM은 초기에는 제한적인 영향에 그치지만 2031년 이후 수출 감소 폭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무상할당 급감·적용 품목 확대... 제조업 전반 영향권 진입

CBAM은 수입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인증서 형태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현재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기초 소재 중심이지만, EU는 2028년부터 이를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기기 등 약 180개 다운스트림(Downstream)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다운스트림 품목까지 포함될 경우 CBAM 적용 품목이 EU 전체 역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3.16%에서 약 7.2%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CBAM 영향을 키우는 핵심 변수는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무상할당 축소다. EU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제공해 온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2026년 97.5%에서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2031년에는 무상할당률이 절반 이하인 39%로 급감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유상 탄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다.

● EU 역내 무상할당률 감축 계획(2026~2034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무상할당률(잔존 비율)	97.5%	95.0%	90.0%	77.5%	51.5%	39.0%	26.5%	14.0%	0%

출처: 한국무역협회(자료: 유럽의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31년을 CBAM 영향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으로 지목했다. CBAM의 취지상 역내 기업과 역외 수입품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역내 무상할당률 축소는 곧바로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량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CBAM 적용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도별 배출권 거래 비용을 추산해 한국

CBAM 제품의 EU 수출가격 상승률(전년 대비)을 분석한 결과 2028년 0.9%에서 2034년 18.2% 까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U 수출물량 감소폭은 2030년까지 0.9~5.3% 수준에 머물지만, 2031~2034년에는 감소폭이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 EU-ETS 탄소가격 전망치(2026~2034년) ●

단위: 유로/tCO₂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EU-ETS 탄소가격 전망치	97	112	125	137	150	174	192	215	248

출처: 한국무역협회(자료: Redshaw Advisors)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글로벌 무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은 EU 시장 대신 제3국으로 수출을 전환하거나, 생산거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역시 무역구조 재편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영향은 더욱 복잡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CBAM의 영향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철강 등 1차 소재 수출기업이 주요 대응 대상이었다면, 향후에는 완제품 제조기업은 물론 부품 공급업체와 원재료 공급기업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기업은 자사 공정의 배출량 관리에 그치지 않고 ▲원재료 조달 단계의 탄소배출, ▲협력업체의 배출 데이터 확보, ▲전력 사용 구조, ▲에너지 믹스 등 공급망 전반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 난이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31년부터 CBAM에 따른 영향이 심화되는 만큼 2030년까지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무역협회 이관재 수석연구원은 “2028년 CBAM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2031년부터 탄소 비용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2030년 이전까지 저탄소 설비 투자와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업이 제품별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고 EU 공인 검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와 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과 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3월 26일 5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CBAM을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어 ESG 정보 제공부터 컨설팅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CBAM이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어 기업은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전략 차원의 탄소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쟁 4주 차”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공급망·수출 지원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2월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월 12일 100달러를 넘어서며 약 41% 급등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커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휘발유($\Delta 7 \rightarrow \Delta 15\%$)와 경유($\Delta 10 \rightarrow \Delta 25\%$)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을 위해 UAE 원유 도입 확대,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기업 간 체결한 LNG 스왑, 국제공동비축유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동시에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나프타, 요소, 비철금속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는 23일 공급망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나프타 취급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이 추진된다. 또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연간 공급계약을 확대하는 등 비축 물량을 확충하고 유가와 관련 있는 아스콘, 종량제봉투, 건설자재는 가격·공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식의약품 포장재도 수급 동향과 생산차질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대체 수입 비용 증가분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도 포함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우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완화 지원 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물류 부문에서는 범부처 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기업별 수요를 선사와 매칭

해 물류 병목 해소에 나선다. 특히 수출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쟁 할증료·우회 운송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한다. 긴급 바우처는 신청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고유가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령 해운업은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대출 무담보 보증, 긴급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응을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①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② 공급망 관리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으로 유가 상승에 적극 대응 -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점검 강화 등 공공요금·민생 물가 안정적 관리	- 공급망 위기대책본부 즉시 가동, 수급조절·금융지원·모니터링 강화 - 나프타·요소·비철금속·유기연동제품 등 핵심 품목별 비축 및 수급관리 강화
③ 취약부문 피해 지원	④ 외환·금융시장 안정
- 피해기업에 금융·물류비 직접지원 확대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고유가에 취약한 소상공인·농어민·화물·여객 등 취약계층 지원 지속 - 고유가 취약업종 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둔화 우려에 선제 대응	- 환율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 - 관계기관 공조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점검, 리스크 관리 강화

자료: 재정경제부

나프타 수출통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3월 27일 시행'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자 정부가 요소수와 나프타에 대한 긴급 수급 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했다.

재정경제부는 3월 27일부터 「축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를 취급하는 수입·제조·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시행했다.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정보를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특히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같은 날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했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프타 수입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나프타를 수출신고 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하고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나프타의 선상수출신고를 허용해 왔지만, 이번 수출제한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선상수출신고 또한 중단된다.

정부는 필요시 정유사에 생산 확대나 특정 기업에 대한 공급 조정 등 수급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3월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 김성은 기자 |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최대 19.85%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면서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3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 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이번 최종판정으로 일본산 산업용 로봇은 17.45~18.64%, 중국산은 15.96~19.8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제품은 HSK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제8515.31-9010호에 해당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의 조사개시를 보고받았다. 중국산 폴리는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했으나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서준식 기자 |

관세청, 선박유 블렌딩 절차 대폭 간소화··· 시간·비용 절감

관세청이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하는 블렌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3월 24일 시행됐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탄소·저황 선박유 등 친환경 연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에 민감해 일반 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돼, 친환경 선박유 확보가 항로 개척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중합보세구역을 활용한 선박유 블렌딩 및 제조·공급(병커링)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1월 중합보세구역 내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석유·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 연료로 공급되는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블렌딩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받은 뒤, 이를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2~3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업체는 별도로 비어 있는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블렌딩 원재료를 혼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블렌딩 기간이 단축되고 탱크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김성은 기자 |

EU 과불화화합물 규제 본격화··· 정부·산업계 공동 대응 착수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규제 입법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내 산업계가 민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월 25일 주요 업종별 협회,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산업계 PFAS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EU가 이달 말 PFAS 규제안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수렴 등 규제 입법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방수·방유 기능이 뛰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는 특성이 있어 EU는 해당 물질군 전반에 대한 사용 제한을 추진해 왔다.

EU는 규제 도입에 따른 산업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초안 공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규제가 확정되면 PFAS 물질 및 이를 포함한 제품의 EU 내 제조·사용·수입·유통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EU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산업 용도별로 PFAS 사용 전면 금지, 일정기간 유예 후 사용 금지, 조건부 지속 허용으로 3가지 규제 옵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영향 분석 및 의견서 제출, ▲EU PFAS 규제안 입법 모니터링, ▲업종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특히 2024년부터 추진해 온 PFAS-Free 섬유 소재 및 이차전지 소재 등에 대한 R&D 지원을 올해에도 신규 확대해 신물질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EU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는 즉시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분석 보고서와 기업용 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의견수렴 기간(3~5월) 주요 업종 단체에 별도 문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 서준식 기자 |

중동 전쟁에 중소기업 더 흔들린다 “물류비 폭등·계약 취소 현실화”

나프타 등 원부자재 의존도 높아... 공급망 리스크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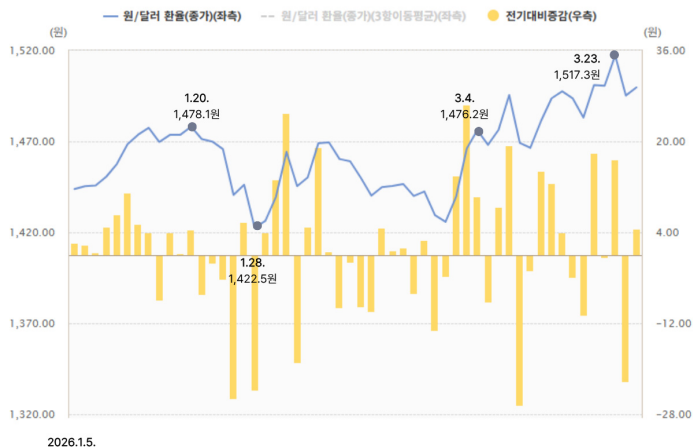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수출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류비 급등과 계약 취소 등 현장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월 26일 ‘중소기업 이슈n포커스’에 ‘중동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 2025년 기준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 비중은 5.4%로 전체 기업 평균(2.9%)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중동 수출 중소기업은 1만 3,859개사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전쟁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화장품, 중고차,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이 중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충격을 키운다. 동일한 리스크도 중소기업에는 더 직접적이고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 공급망·수출·원가... 중소기업 ‘삼중 압박’ 현실화

●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추이(1.5~3.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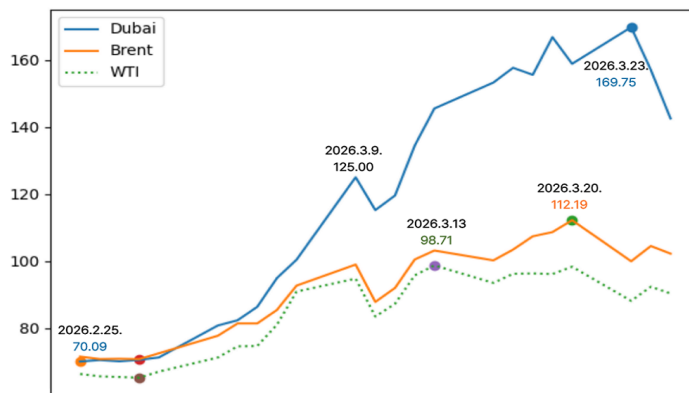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동전쟁의 영향은 단순한 수출 감소를 넘어 공급망과 경영환경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원부자재 측면에서 특정 품목의 높은 의존도가 리스크로 부각된다. 중소기업의 전체 중동 수입 비중은 0.7%로 낮지만, 상위 15대 수입 품목에 포함된 나프타, 알루미늄 웨이스트·스크랩, 비합금 알루미늄 괴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중동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프타의 경우 중소기업 수입의

82.8%가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 중동에 집중돼 있다. 이는 전체 기업 평균(약 6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구조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는 취약성을 의미한다.

수출 현장에서도 거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중고차,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의 발주 조정, 계약 취소, 대금 결제 지연, 선적 지연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국제 유가 상승 추이(2.25~3.25.) ●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 물류비·보험료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수입 원자재 원가 부담이 급증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화학 업종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금속 가공업 분야 중소 제조기업은 원부자재 가격·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어, 제조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3월 1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제이슈’에 따르면, 원유 105~125달러, LNG 60~90% 상승이 3주간 이어질 경우 한국 제조업 생산비는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원유 150~180달러, LNG 150~200% 상승) 제조업 생산비는 11.8% 상승하며, 특히 석탄 및 석유제품(83.0%), 전력·가스 및 증기(77.7%) 업종의 상승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의 빙현지 전문연구원은 “에너지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정제 과정과 연계된 산업 원자재까지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 차질이 산업재 공급 차질로 동시에 연결되는 복합적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 “물류가 가장 큰 리스크” 현장 피해 이미 현실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따르면 중동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 요인은 ‘물류’로 나타났다.

KOTRA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에 접수된 256건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류비 급등과 지원 요청(28%)이었다. 선적 지연, 항구 폐쇄, 우회 운송 비용 증가, 창고료 및 보험료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기업은 이란으로 플라스틱제를 수출하기 위해 출항 예정이었지만, 최근 선사로부터 4피트 컨테이너당 3,000달러 추가요금을 요구받았다. 그후 항구 폐쇄로 운송 불가로 통보받아 반송 및 창고료 등의 비용이 발생해 지원을 요청했다.

물류 차질로 대체 항로 정보를 문의하는 사례도 12%에 달했다. 이란에 수출하는 시약 제품을 두바이 공항에 발송했지만, 이란의 수하인(consignee)이 해외로 피신하면서 통관이 불가하다는 애로사항을 전한 기업도 있었다.

●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접수 사례 ●

물류	금융	정보	기타	합계
74	30	83	69	256

출처: KOTRA

KOTRA에 따르면, 23일 기준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의 주요 항만 24개 중 정상 운항을 하는 곳은 9개에 불과하다. UAE의 코르파칸, 오만의 소하르·살랄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젓다이슬라믹(홍해) 등 대체 항만이 활용되고 있지만 위험 비용 증가나 내륙 운송비 상승 등의 부담이 뒤따른다. 항공 운송 역시 일부 영공 폐쇄와 화물 적체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수출 가능 여부 및 대금 결제 관련 문의(15%), 바이어 연락 두절 및 계약 취소(7%) 등도 확인되며 거래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KOTRA는 중동 13개 무역관을 통해 항만·항공 운항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우회 경로 및 물류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공급망 재편·시장 다변화 시급

전문가들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민이 부연구위원은 “전략 비축 확대, 우선 공급 협력체계 구축, 대체 공급선 확보 등 원부자재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우스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 위기를 넘어 공급망과 수출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신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나 대체 공급망 확보 능력이 제한적인 만큼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빙현지 전문연구원 또한 에너지와 산업재 공급망의 통합 관리를 주문했다. “원유·LNG와 나프타·무수암모니아·헬륨 등 에너지 연계 산업재의 리스크가 동시에 상승하므로 전략 품목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EU 통관

EU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사실상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된다. 탄소 규제가 글로벌 무역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제도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는 한편,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KOTRA 김도연 브뤼셀무역관은 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CBAM의 최신 동향과 주요 내용을 전했다.

“이젠 탄소도 관세” EU CBAM, 철강 넘어 전 산업 뒤흔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주요 내용과 전망



김도연 | KOTRA 브뤼셀무역관 과장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환경 정책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통상 질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기후 목표 달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그린딜)을 목표로 역내 탄소 규제를 강화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이 이전되는, 이른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EU는 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 탄소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CBAM 제도를 도입했으며, CBAM은 탄소 가격을 무역정책과 결합한 제도라는 점에서 설계 단계부터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CBAM은 특정 품목을 EU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CBAM 인증서 형태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5월 발효됐다. 다만, 제도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배출 데이터 축적과 기업 적응을 위해 준비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 수입기업은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제도에 참여했다. 이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 단계에 돌입해, 수입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CBAM 제도 설계 당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실무적 부담이 드러났다. 특히 소규모 수입자의 과도한 행정 부담, 복잡한 배출량 산정 방식, 인증서 관리 의무 부담,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됐으며, 이에 EU는 제도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기업의 과도한 이행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개정은 EU가 2025년 시리즈 형태로 발표한 옴니버스패키지 중 첫 번째 패키지인 'Omnibus I'에 포함돼 진행됐으며, 2025년 10월 간소화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 개정안을 통해 면제 기준 도입, 배출량 산정 방식의 일부 완화, 인증서 일정 및 운영 요건 조정, 제3자 위임 허용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1. CBAM 법령 체계



출처: AI 생성 이미지

CBAM 제도는 기본 규정과 다수의 하위법령이 결합된 다층적 구조로 운영된다. 중심 법령은 2023년 제정된 CBAM 기본 규정(EU 2023/956)과 2025년 채택된 간소화 개정 규정(EU 2025/2083) 2개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내재 배출량 산정, 수입신고자, CBAM 등록부, 검증 등 세부 규칙은 다수의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과 위임법(Delegated Regulation)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 말에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위임법이 대거 마련되면서 제도 운용의 실질적 틀이 한층 구체화됐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강화 개정안도 발표하며, CBAM이 단순한 도입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집행 및 적용 확대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CBAM 법령 및 관련 문서 발표 현황(2026.3.24. 기준) ●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관보 게재일
기본 규정	CBAM 규정	EU 2023/956	2023.5.16.
	CBAM 개정 규정(간소화)	EU 2025/2083	2025.10.17.
위임법	검증기관 승인 및 검증 수행 절차 요건	EU 2025/2551	2025.12.22.
	CBAM 전환 기간	EU 2023/1773	2023.9.15.
	CBAM 등록부(Registry) 및 개정	EU 2024/3210 EU 2025/2550(개정)	2024.12.30. 2025.12.22.(개정)
시행령	승인된 수입신고자 및 개정	EU 2025/486 EU 2025/2549(개정)	2025.3.18. 2025.12.22.(개정)
	내재 배출량 검증 원칙	EU 2025/2546	2025.12.22.
	내재 배출량 산정 규칙	EU 2025/2547	2025.12.22.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및 공표	EU 2025/2548	2025.12.22.
	세관통관 정보	EU 2025/2619	2025.12.22.
	EU-ETS 무상할당 반영 인증서 수량 조정	EU 2025/2620	2025.12.22.
	기본값(default values)	EU 2025/2621	2025.12.31.
별도 입법	CBAM 강화 규정 개정안 - 철강·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 확대 및 우회 방지 조치	2025/0419(COD) (입법 중)	2025.12.17.*
	역내 생산자 지원 기금 규정안 (Temporary Decarbonisation Fund)	2025/0418(COD) (입법 중)	2025.12.17.*
통신문	CBAM 전환 기간 이행 보고서	COM(2025) 783	2025.12.16.

*EU 집행위원회 제안일(출처: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저자 작성)

2. CBAM 주요 내용: 2026년 본격 시행, 실제 인증서 구매·제출은 2027년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이며, 이들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을 산정한 뒤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단, 간소화 개정 규정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을 합산한 연간 총 누적 수입량이 50톤 이하인 경우 CBAM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소액·소규모 수입자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적정성이 평가되고 필요시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CBAM 규제 대상 품목의 세부 CN Code(EU의 HS Code로, HS Code 6자리에서 2자리 세분화된 코드)는 다음 표와 같다.

품목	세부 품목(CN Code)
시멘트	25070080*, 25231000, 25232100, 25232900, 25233000, 25239000 *제외 품목: 비소성 카올린 점토(non-calcined kaolinic clays)
전력	27160000
비료	28080000, 2814, 28342100, 3102, 3105(제외 품목: 31056000)
철강	72(일부 철강류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00, 7310, 731100, 7318, 7326, 26011200 *제외 품목: 72022, 72023000, 72025000, 7202700, 72028000, 72029100, 72029200, 72029300, 720299, 72029910, 72029930, 72029980, 7204
알루미늄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00, 7610, 76110000, 7612, 76130000, 7614, 7616
수소	28041000

출처: EU 집행위원회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사전에 'CBAM 수입신고자(Authorised CBAM Declarant)'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품목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적인 등록 절차라기보다는, 수입자가 향후 CBAM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구조에 가깝다. 신청은 기업이 설립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을 통해 CBAM 등록부에서 이뤄지며, 신청서에는 기업 기본 정보, 경제운영자 등록·식별(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수입 예상 품목 및 물량, 의무 이행 역량 관련 증빙 자료, 과거 법 위반 여부 관련 선언 등이 포함된다. 관할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통상 120일, 필요시 최대 180일까지 심사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복 신청 여부나 과거 승인 취소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기업에는 추가적인 보증금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고 및 인증서 제출 의무는 유지된다.

CBAM 실질적 이행의 핵심은 수입품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설비 수준에서 모니터링된 배출량을 생산공정별로 귀속시킨 뒤, 다시 제품 생산량에 따라 품목 단위로 배분해야 한다. 전구체(precursor)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품목(simple goods)의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정에 귀속된 배출량을 활동 수준(activity level)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비교적 직접적인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전구체를 투입해 제조된 복합품목(complex goods)은 생산공정 자체의 배출량뿐 아니라, 투입된 전구체에 이미 내재된 배출량까지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구조가 한층 복잡해진다. 이 경우 자사 공장 배출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입재와 중간재 단계까지 포함한 제품 단위 배출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배출량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실제값(actual values)과 기본값(default value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계산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인증서 부담 수준과 검증 부담을 함께 좌우하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 실제값을 사용할 경우 생산공정, 에너지원, 투입재, 전구체 등의 특성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어 실제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그만큼 데이터 수집과 문서화 부담이 크고,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반대로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과소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가산율(mark-up)이 반영되므로 실제값 대비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출 구조가 비교적 효율적인 기업일수록 실제값 기반 접근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데이터 확보 여건이 부족한 기업은 기본값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값을 활용해 검증 절차를 받는 경우, 검증은 설비 및 공정 구조, 모니터링 계획, 배출 산정 방식, 전구체 데이터의 신뢰성, 내부 통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실사 기반 절차로 운영된다. 첫 검증 연도에는 물리적 현장 실사가 의무이며, 이후에도 최소 2년마다 한 번 이상 현장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전 실사 결과와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상 실사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내재 배출량은 그대로 CBAM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EU 배출권거래제(EU-ETS,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와의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 조정된다. EU 역내 생산자는 아직 일정 범위 내에서 무상할당을 받고 있으므로, 수입품에도 동일한 경쟁 조건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CBAM 부담을 줄여주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ETS 교차 부문 보정계수(CSCF, Cross-Sectoral Correction Factor), CBAM 계수, ETS 벤치마크를 바탕으로 산정된 품목별 CBAM 벤치마크 등이 반영된다. 특히 CBAM 계수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ETS 무상할당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일정에 맞춰 설계돼 있다. 다시 말해, 제도 초기에는 역내 생산자에게 여전히 상당한 무상할당이 남아 있으므로 수입품의 CBAM 부담도 그만큼 제한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상할당이 줄어들면서 수입기업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CBAM 비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 참고

무상할당 축소 일정: 2026년(2.5%), 2027년(5%), 2028년(10%), 2029년(22.5%), 2030년(48.5%), 2031년(61%), 2032년(73.5%), 2033년(86%), 2034년(100%, 종료)

최종적으로 수입신고자가 부담해야 할 CBAM 비용은 조정된 내재 배출량에 인증서 가격을 적용하고, 필요시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집행위원회가 EU-ETS 경매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중평균 가격을 바탕으로 정하며, 2026년에는 분기 단위로 가격이 산정되고 2027년부터는 주 단위 산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국 또는 다른 제3국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실제로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인증서 제출 수량 차감에 반영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배출에 대해 역외와 역내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수출국에서 지불한 탄소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중으로,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실제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자가 해당 탄소 비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 역시 검증 대상이 된다.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마련할 국가별 기본 탄소 가격(default carbon price)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제3국 탄소 가격의 인정 범위, 입증 방식, 차감 방법 등을 구체화할 세부 시행령은 아직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라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즉, CBAM 비용은 단순히 EU 안에서 정해지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국의 탄소 정책과

그것이 EU 기준상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행 일정 측면에서 보면, 2026년은 제도상 본격 시행의 첫해이지만 실제 인증서 구매·제출이 이뤄지는 시점은 2027년부터다. 수입신고자는 2026년 수입분에 대한 내재 배출량을 산정·관리해 왔다가, 2027년 2월부터 판매가 개시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2027년 9월 30일까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월 31일까지는 잔여 인증서에 대한 환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환매되지 않은 잔여 인증서는 11월 1일 취소된다. 따라서 **2026년은 인증서 구매 의무는 없으나 2027년 제출 의무를 위해 배출량 산정 체계, 공급망 데이터 확보, 검증 대응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연간 신고와는 별도로, 수입신고자는 각 분기 말까지 해당 연도 연초 이후 누적 수입량의 내재 배출량 50%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계정 내에 보유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신고 직전에만 인증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고, 제도 이행을 상시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만일 수입신고자가 제출해야 할 인증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납 인증서 1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부족한 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종합해 보면, CBAM은 단순히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입 단계의 자격 요건, 제품별 배출량 산정, 제3자 검증, EU-ETS와의 연동, 인증서 구매 및 제출, 분기별 보유 의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탄소 규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또 공급망 차원에서 어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실제 대응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3. CBAM 강화안: 중장비,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다운스트림 제품도 규제 대상

2025년 12월 말 EU 집행위원회는 CBAM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우회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원재료 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해당 소재를 포함한 다운스트림 제품(downstream goods,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데 있다.

지금까지 CBAM은 기초 소재 단계의 제품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실제 산업 구조에서는 해당 소재가 중간재나 완제품 형태로 가공돼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고탄소 원재료가 역외에서 가공된 뒤 비대상 품목 형태로 EU 시장에 유입될 경우, 제도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에는 중장비,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기계, 광학 의료장비, 가구 조명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제품이 포함돼 있으며, 산업용 공급망 관련 제품이 전체의 94%, 가정용 제품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CBAM이 기초 소재 산업을 넘어 제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적용 대상 원재료를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규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CBAM 개정안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 목록 ●

품목	CN Code
철강	73143100, 73144100, 73144900, 731700, 731210, 73143900, 73202089, 73209090, 73239400, 73239900, 7325
구리	ex74151000
비금속	ex83024200, ex83024900, ex83099090
기계	84082010, 84082051, 84082055, 84082057, 84082099, 84089065, 84089067, 841330, 84137035, 841610, 841620, ex84169000, 841810, ex84189990, 84198910, 84198998, ex84199085, 842091, ex84212300, 842430, ex84248210, ex842489, ex842490, 84253100, 84253900, 84254200, 84261900, 84269900, 84279000, 842820, 84283300, 84283990, 84287000, 842890, 84306100, 84306900, ex84311000, ex84312000, ex84313100, ex84313900, 8413149, 84328000, 84329000, 845011, 84501200, 84501900, 84512100, 84541000, 84542000, 845430, 84641000, 84649000, 84741000, 84742000, 84743900, 84791000, ex84805000
전자제품	85013200, 85015381, 85043180, 85043300, ex85045000, 85153990, ex85441110, ex85441190, ex85441900, ex85444920, ex85444991, ex85444993, ex85444995, ex85444999, ex85446010, ex85446090
자동차	ex870421, ex870422, ex87042310, ex870431, ex87043210, ex870441, ex870442, ex870443, 87046000, 87049000, 870600, 870710, 870840, 870870, 870880, ex870891, ex87168000, 87169090
광학·의료(90)	90183210, ex90189075, ex90189084, ex90271090
가구·조명(94)	94017900, 940310, ex940320, ex94069090

주: 'ex'는 CN Code 전체가 아니라 해당 코드 내 포함된 일부 세부품목에만 적용됨을 의미함(출처: EU 집행위원회)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적용 범위 확대뿐 아니라 제도 회피 방지를 위한 집행 기반도 함께 강화했다. CN Code 변경을 통한 품목 재분류, 수입 물량의 인위적 분할,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수출 등이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시됐으며, 향후 이러한 우회 패턴이 확인될 경우 위임법 등을 통해 추가 규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CBAM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예외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CBAM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제27a 조항이 신설됐으며, 역내 시장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집행위원회에 일종의 '긴급 조정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CBAM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CBAM 강화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 향후 전망: 중간재 및 완제품, 화학·정유·제지산업도 적용 검토 중

이번 강화 개정안은 CBAM이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및 정교화되는 규제임을 보여준다. EU는 한편으로 **옴니버스 간소화 개정을 통해 50톤 면제 기준 도입 등 소규모 수입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운스트림 제품으로의 적용 확대와 우회방지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CBAM의 정책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라기보다 기업 부담이 과도한 영역은 조정하되,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CBAM은 향후 적용 대상과 배출 범위 부문 측면에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적용 대상 측면에서는 규제 범위의 점진적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 소재 중심으로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해당 소재를 포함한 중간재 및 완제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EU는 현재 화학, 정유, 제지, 유리, 세라믹 등 다양한 산업을 후속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배출 범위 측면에서도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전력 등의 경우 주로 직접 배출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평가를 통해 간접 배출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비록 전력시장 구조, 국제 경쟁력,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추가 평가를 진행한 뒤 입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향후 간접 배출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전구체 범위 확대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 단위를 넘어 생산 과정 상류 단계의 배출까지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CBAM이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대응 방식에 구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에는 1차 소재를 직접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CBAM 대응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완제품 제조기업과 부품 공급기업, 나아가 원재료 공급망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자사 배출량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원재료 조달, 협력업체 배출 데이터, 전력 사용 구조 등 공급망 전반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CBAM은 더 이상 특정 품목 수출기업에 한정된 통상 규제가 아니라, 탄소 비용을 기준으로 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대EU 수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와 산정 방식 정교화까지 고려한 중장기 전략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에 관한 문의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질문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또한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2. FTA 원산지 판정

(1) 개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역내산 입증을 하게 된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세변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산지 판정 대상 물품의 HS Code를 결정하고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한 뒤 원산지 판정을 진행한다.

원산지 판정 이후에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에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방법, 즉 PSR을 따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이는 필수 기재사항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항 중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하고, 수입국에서 규정된 법적 절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에 관한 방법은 크게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뉘며, 대부분 협정에서는 해당 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방법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발효된 이후 협정들의 경우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병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자율발급은 수출자, 생산자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신의 법적 책임하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물론 한·EU, 한·영국 FTA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건에 대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요건이 존재하는 등 가격적인 제한사항이 있으나, 대부분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다른 제약조건 없이 자유롭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미 FTA는 대표적인 자율발급 FTA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 넓은 편이다.

협정에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에 관해 규정(제6.15조 제1항)에서 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certification)으로 이뤄지거나 나. 증명이 없어도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knowledge)만으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은 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②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기초해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15조 제3항). 의견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조세심판원 사례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기서 ‘수출자의 인지’란 쟁점수출자가 여러 공급자에게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6.15조 제1항의 ‘나’는 원산지증명이라는 절차 없이 수입자 인지(knowledge)에 의해서 특혜관세 신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도 관세청에서의 ‘수출자의 인지’에 관한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자 인지에 의한 신청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서류나 전자문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

또한, 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일반적으로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서식)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 FTA의 경우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이 정해진 형식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돼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ertification need not be made in a prescribed format, provided that the certification is in written or electronic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elements:

-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그리고
-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그러나 한·미 FTA의 자율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없이 수출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된 서식조차 없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을 마련해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권고서식을 활용하지 않아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에 위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반영돼 있다면 이를 한·미 FTA 원산지증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송품장에 협정에서 정한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서도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① [별지 제17호 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 또는 ②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한·미 FTA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한 서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원산지증명서가 한·미 FTA상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관세청 오류 사례집을 확인하면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은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문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운영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작성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후에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 규정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2)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작성

「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별지 제17호 서식]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따로 규정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증명서상 '5. 원산지증명 대상물품 내역'에는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 결정기준)을 작성하는 란이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 권고서식에서는 ①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WO'를, ②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PSR'로, ③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PE'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WO,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물품은 PSR, 원산지 재료 생산품 충족 물품은 PE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작성하는 '란'이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고, 실무에서도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규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이 무조건 작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에서는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해, 증명인의 성명 등 8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뿐,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작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한·미 FTA 제6.15조 제2항 바목에서 규정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등으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앞서 확인한 대로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작성됐다면 유효한 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돼 있든 또는 기재돼 있지 않든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관세청에서는 추가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B’로 표시한 경우 및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질문과 답변은 미국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일반적인 양식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다음과 같이 A, B, C라는 문구를 원산지 결정기준의 표현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PREFERENCE CRITERIA:

- A - a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B - a good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f both of the Parties and each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pecified in Annex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 or Annex 6-A, or the good otherwise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 content or other requirements specified in Annex 4-A or Annex 6-A.
- C- a good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제6.1조(원산지 상품)에 대한 사항을 WO, PSR, PE로 작성하는데, 미국에서는 A(WO), B(PSR), C(PE)로 사용한다.

(3)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 작성을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Preference Criterion’을 필수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한·미 FTA 제6.15조 제2항 바목에서 규정하는 “information demonstrating that the good is originating(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미국 세관국 경보호청(CBP)의 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CSMS)의 ‘CSMS# 12-000479-Preference Criterion on Korea FTA Certification of Origin Required’를 확인해보면, 미국 관세율표(HTSUS)에 명시된 General Note 33(b)에 명시된 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협정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하고, 특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경우, 적용된 tariff shift rule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FTA 원산지증명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GN33(General Note 33)은 미국 CBP가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 관세율표(HTSUS)에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수록한 관세율표 주석을 말하며, 미국 CBP는 FTA가 추가될 때마다 해당 주석을 추가하고 있다.

추가로 CSMS# 13-000564-Free Trade Agreements Certification of Origin and the Preference Criterion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해당 CSMS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란에 물품이 협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U.S.-PERU TPA(Trade Promotion Agreement)의 예시를 안내한다.

참고로, 미국·페루 TPA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원산지증명이 정해진 형식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① the name of the certifying person, including as necessary contact or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② tariff classification under the Harmonized System and a description of the good, ③ information demonstrating that the good is originating, ④ date of the certification, ⑤ in the case of a blanket certification issued as set out in paragraph 4(b), the period that the certification covers를 규정한다.

예시에서는 미국·페루 TPA를 활용해 HTSUS 제7804.11.00호로 분류되는 납판(lead sheet)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란에는 ① WO를 적용하는 경우 “HTSUS General Note 32(b)(i) 또는 대안적으로 Peru TPA Article 4.1(1)(a)”를 기재하고 ② PSR의 경우 “HTSUS General Note 32(n)78.2 또는 대안적으로, Peru TPA Annex 4.1, Chapter 78, Item 2”를 기재하고, ③ PE를 적용하는 경우 “HTSUS General Note 32(b)(iii) 또는 Peru TPA Article 4.1(1)(c)”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협정, 규정, 또는 공식 발행 자료에서 대안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세번변경(tariff-shift) FTA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A’, ‘B’, ‘C’ 기준을 둠]. 추가적으로

CBP는 예시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식 중 'General Note'를 인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상 편의성과 HS Code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B'와 같은 작성 방식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FTA인 NAFTA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작성에 대한 쟁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A, B, C 등으로 작성한 경우 미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 생산자를 통해 해당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관세율 15%를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한 한·미 FTA 활용 실익이 감소했으나, 실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관세환급 가능성 등을 대비해 많은 업체가 기존 관세가 15%가 넘지 않는 경우에도 한·미 FTA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관세 정책, 그리고 그 이후 적용될 관세정책에서도 한·미 FTA는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있는 미국의 관세정책 속에서도 한·미 FTA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FTA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 간접재료 부가가치기준 판정

왁스, 주형 등 제품 주조 시 투입되지만 완성 시에 제품의 일부가 되지 않는 재료도 부가가치기준 판정에 포함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제품 생산에 사용됐으나, 최종 구성품에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은 FTA에서 '간접재료'로 정의합니다.

□ 간접재료 예시

생산용 재료: 촉매, 연료, 공구, 주형, 작업복
시험용 재료: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설비용 재료: 설비, 건물 유지보수용 부품, 재료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이들 간접재료는 협정에 따라 직접재료가 아닌 제조간접비로 계상되거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되기도 해, 부가가치기준으로 판정 시에는 제조간접비로 계상 또는 원산지재료비로 계상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면 됩니다.

□ 직접재료에서 제외(제조간접비로 계상)하는 협정

-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미국, 페루, 콜롬비아, 인도, EU, 튀르키예, 캐나다, 중국, 베트남
- 칠레, 호주, 뉴질랜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우편물 통관 /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치나요?

일반적인 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하면,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 가능)됩니다. 우편물 중 면세대상(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현장에서 면세해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 없음)되며, 과세 대상 및 검역대상 물품 등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해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관대상 우편물의 경우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에 따라 간이통관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일반수입 신고를 하면 우편통관부서에서 순차적으로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담당자 배정 후, 담당자가 우편물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가격자료 등 자료보완 및 추가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통관이 완료되면 부과되는 세액 및 세금 납부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우편물의 배송현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ems.epost.go.kr)의 'EMS·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우편물번호'로 조회 시 확인 가능하며, 세관에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배송 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특수통관 / 부항기 통관

부항기를 해외 직구할 때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알 수 있습니다.

부항기는 대략적으로 제9018.90-8900호에 분류를 검토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은 통상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중략> ...

◦ 수동식부항기 ◦ 전동식부항기 ... <후략>

2. 동물용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것은 위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통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요건 구비 대상 여부, 요건 면제 가능 여부 등은 각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 확인기관에 문의해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건 확인기관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42(2025.8.28.) 대상결정

최 천 식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수

I. 머리말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유효기한 내에 만 허용된다. 그러나 법은 예외를 둔다. 만약 납세자가 잘못된 품목번호로 신고한 이유가 관세당국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믿었기 때문이라면 비록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FTA 사후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관세당국이 품목분류 유권해석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 변경고시하는 경우, 잘못된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FTA 사후적용 기한의 실기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한 FTA 사후적용 가능 여부의 판단기준은 납세자의 수정신고나 세관장의 경정처분이라는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귀책사유의 소재다. 즉 납세자가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했든, 세관이 강제적으로 경정을 했든 관계없이, 품목분류 신고오류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FTA 혜택 여부가 결정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관0042 사건은 바로 이 귀책사유를 둘러싼 납세자와 세관장 간의 법리 공방을 담고 있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품목분류 수정신고 안내와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를 이행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관세당국의 견해 변경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즉,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세당국의 관여에 의한 결과임을 주장하며 FTA 사후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행한 수정신고의 본질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가 아닌 ‘납세자의 단순 품목분류 판단착오’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관세법」 제87조가 정한 사후적용의 예외는 관세당국이 기존의 공식적인 HS 견해를 직권으로 뒤집는 고시 변경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건은 단순히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사전심사 회신일 뿐이라는 논리라는 것이다. 또한 세관장의 수정신고 안내 역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통상적인 행정지도일 뿐, 이를 관세당국의 책임 있는 품목분류 견해 변경으로 확대 해석해 1년이라는 FTA 사후적용의 법정기한을 복구시킬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세관장의 안내에 따른 납세자의 협력이 법적 권리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무적 괴리를 보여줄 여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당국의 공적인 품목분류 견해표명과 납세자의 자발적 수정신고 협력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을 분석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 품목분류 오류의 책임이 관세당국으로 전가돼 FTA 사후적용 신청기간 1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 그 법리적 쟁점을 살펴본다.

II.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21.7.26.부터 2022.12.27.까지 미국 수출자로부터 치과용 프라이머(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와 산부식제(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합해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제3006.40-1000호(치과용 시멘트, WTO협정세율 0%), 제3006.40-2000호(치과용 충전제, WTO협정세율 0%)로 각각 분류해 수입신고했고, 처분청은 수리했다.

청구법인은 2024.9.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10.10. 쟁점물품2의 품목번호를 HSK 제3306.90-2000호(8%)로 결정했고, 2024.11.5. 쟁점물품1의 품목번호를 HSK 제3824.99-9090호(8%)로 결정·회신했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해 2024.11.29.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납부했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협정관세율 0%)을 하면서, 그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했으나, 처분청은 2025.1.2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III.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기존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FTA관세특례법」(2024.12.31. 법률 제2061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돼 같은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또한, 「FTA관세특례법」에서 자발적 수정신고 시에도 FTA 협정

세율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한 취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자 스스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특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관세청장이 「관세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유사물품의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가 포함되더라도 단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이하 「품목분류 변경고시」라 한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FTA관세특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 해석에 있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이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정신고를 안내한 건으로 세관장이 경정한 때에만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이 허용된다면 처분청은 어떠한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경정이 아닌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납세정정의 방법에 따라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FTA관세특례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세협력을 위해 자발적 수정신고를 한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FTA관세특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해석에 있어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2.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해야 하고,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의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으로 그 요건을 제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은 ‘「관세법」 제87조 또는 세관장의 직권경정에 의해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87조의 품목분류 변경은 수입자가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을 신뢰하고 해당 품목번호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수입자의 귀책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품목분류 오류 안내에 따라 「관세법」 제86조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으로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제1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취지는 수입자 스스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특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처분청이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시행된 품목의 수정신고에 대해서만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축소해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FTA관세특례법」(법률 제20616호, 2024.12.31.)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은 수입자의 수정신고에 대한 모든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FTA관세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

현행	개정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제9조 제2항)	□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 (원칙) 수입신고 수리후 1년 이내	○ (현행과 같음)
○ (예외)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추가>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시행일: 2025.1.1.
	○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또한 위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에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의 변경’을 이유로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설명해 품목분류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의도적으로 단서 조항을 배제하고 유리한 부분만 선택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서 파생되는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두11652 판결 등).

3)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수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안내다.

처분청은 2024.8.30. 사후세액심사 과정에서 품목분류 오류 안내를 했고, 청구법인이 2024.9.3. 신청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회신 결과에 따라 2024.11.6. 및 2024.12.24. 청구법인의 신고대리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했다. 이는 사후세액심사 결과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 경정을 하기에 앞서 오류점수 면제,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수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수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안내다.

청구법인이 추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가능 여부 등은 처분청이 알 수 없고, 사후심사 건별로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조세법은 과세의 근거 규정이나 감면 규정 모두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세법은 복잡하고 난해하지만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IV. 조세심판원 결정요지

1. 쟁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의 품목번호가 HSK 제3824.99-9090호로 분류되는 것과 쟁점물품2의 품목번호가 HSK 제3306.90-2000호로 분류되는 것에는 서로 이견이 없다. 청구법인은 자발적 수정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권한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FTA관세특례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에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검토 의견

1.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법적 성격 및 발생 원인

품목분류는 관세율 산정의 기초이자 FTA 협정세율 적용의 출발점이다. 「관세법」은 수입자의 자진 납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일물일번(一物一番)’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출입물품의 복잡성과 첨단 신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수입자의 판단과 관세당국의 HS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 제86조(사전심사)와 제87조(변경고시)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관세행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나, 그 법적 효력의 범위는 대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우선 세관장에 대한 기속력 유무와 관련해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변경고시는 관세청장이 하급 행정기관인 세관장에게 앞으로 이 물품은 이 번호로 분류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행위다. 따라서 세관장은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절대적으로 기속되며, 변경고시와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해 처분할 수 없다.

반면 품목분류 결정 또는 변경고시의 효력은 납세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인 행정규칙에 해당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 즉, 납세자는 품목분류 결정이나 변경고시 내용이 관세 법령이나 HS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수입신고하거나 불복(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품목분류 변경고시」는 관세당국이 기존에 가졌던 ‘공적 견해표명’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 등이 발생할 때 이뤄지며 그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① (기존 사전심사 결정 및 유권해석의 오류 발견) 관세당국이 과거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특정 납세자에게 내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나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이 사후적으로 잘못됐음이 판명된 경우다. 이는 유사물품에 대한 세액 심사 과정이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과거 HS 결정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나 품목분류 주(Note)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발생한다. 이는 관세당국 스스로의 'HS오류 자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납세자에게 소급해 관세를 추정할 때 신의성실원칙의 위배 여부가 가장 치열하게 다투지는 영역이다.
- ② (WCO 결정 및 국제적 분류기준의 변경) HS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품목분류기준을 정하는 WCO HS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분류체계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IT 기기나 복합 기능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분류가 상이할 수 있다. 이때 WCO가 특정 품목번호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거나 품목분류의견서(Classification Opinion)를 채택하면,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 고시를 변경한다.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변경이므로 관세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적으나, 변경 시점까지 기존 분류를 신뢰한 납세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실무상 쟁점이 된다.
- ③ (동일·유사 물품에 대한 세관별 분류 상이 해소) 실무현장에서 각 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해 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다. 전국 세관에서 분산 통관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 공무원마다 전문적 판단이 달라 A세관은 0% 세율을, B세관은 8% 세율을 적용하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이러한 품목분류 불일치를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품목분류를 확정해 고시한다. 이는 행정의 통일성과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고시가 나온 시점부터는 전국 세관에서 동일한 분류가 강제된다.

2. FTA 사후적용 신청 제도의 취지

FTA 도입 초기에는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FTA 사후적용은 준비가 부족한 영세 기업이나 행정적 착오를 구제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각 협정마다 사후적용 가능 여부와 기간이 제각각이었으나, 「FTA관세특례법」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사후적용 기한을 설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①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관세행정 실무상 수입 당시에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협정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높은 세율(기본세율 등)로 통관하는 경우가 많다. FTA 사후적용 제도는 이러한 납세자에게 FTA가 부여한 정당한 특혜세율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품목분류 분쟁의 완충 지대) 품목분류는 매우 복잡해 수입자와 세관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수입자가 A번호(세율 0%)로 신고했으나 나중에 B번호(세율 8%)로 판명된 경우, 만약 B번호가 FTA 협정세율 대상이라면 사후적용을 통해 세율 차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을 상쇄해 줄 수 있다.
- ③ (신뢰보호 및 행정 효율성) 관세당국의 잘못된 유권해석이나 변경된 지침 때문에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수입 시점에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위해 통관을 지체시키는 것보다, 우선 통관 후 사후 정산하게 함으로써 물류 흐름을 신속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3. FTA 사후적용 신청기한의 특례조치

세관장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2024.12.31. 「FTA관세특례법」 제9조를 개정해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돼 제38조의3 제2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취지를 도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정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사후적용 신청사유를 추가했다.

- ① (귀책사유의 전환) 납세자가 관세당국의 기존 유권해석을 믿고 신고했다면, 1년이 지난 후 품목분류가 변경됐을 때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반영했다.
- ② (형평성 제고)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된 분류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을 독려하고 권익을 강화하고자 했다.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FTA 사후적용 논의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실무적인 쟁점이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관세법」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충돌이다. 실무상 관세당국의 잘못된 견해표명을 믿고 수입신고를 해온 납세자에게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은 FTA 사후적용을 통한 세액 환급이 아니라 애초에 관세당국이 소급해 추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즉, 관세당국이 과거에 특정 품목번호가 맞다고 공식적으로 고시하거나 질의회신 시 이를 통보(공적 견해표명)했다면, 나중에 이를 뒤집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납세자는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납세자는 관세당국의 기존 유권 해석을 신뢰했으므로 소급 추정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인정되면 부속세 액뿐만 아니라 가산세 전체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납세자는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한 추정 직전 법리적 명분을 중시할지 실질적 경제 이익을 중시할지 결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이때 A세번(양허세율 5%)으로 신고했던 물품이 B세번(기본세율 8%)으로 품목분류 변경고시됐으나, 해당 물품이 FTA 협정세율인 C세번(0%)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납세자가 「관세법」 제6조에 따라 관세당국의 기존 견해표명을 신뢰했음을 근거로 소급 추정의 부당성을 주장해 승소한다면, 납세자는 기존에 납부했던 5%의 세액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관세당국의 HS 귀책오류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제거라는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5%의 관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납세자가 관세당국의 변경된 품목분류(B세번, 8%)를 일단 수용하고 자발적 수정신고를 거쳐 FTA 사후적용(C세번, 0%)을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비록 기본세율 8%로 추정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FTA 사후적용을 통해 최종 세율을 0%로 낮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초 납부했던 5%의 관세마저 환급받게 돼 관세 부담은 ‘제로’가 된다. 즉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해 5%를 유지하는 것보다, FTA 사후적용 신청절차를 밟아 0%를 적용받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5%만큼의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된다.

다만, 이 전략에는 반드시 감수해야 할 비용이 따른다. 바로 가산세다. 수정신고나 경정처분은 납세자의 당초 신고(A세번, 5%)가 결과적으로 부족(B세번 8% 대비)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8%와 5%의 차액인 3%에 해당하는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병행 부과된다. 비록 FTA 사후적용으로 본세(관세)는 0%로 환급받아 큰 실익을 챙길 수 있지만, 당초 잘못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행정적 책임(가산세)은 피할 수 없는 단점이 된다. 결국 납세자는 환급받을 관세액과 납부해야 할 가산세액을 정밀하게 비교衡量해 가장 유리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4. 조세심판원 결정의 시사점

본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FTA관세특례법」상 사후적용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인 ‘진정한 의미의 품목분류 변경(「관세법」 제87조)’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과거의 견해를 뒤집은 변경고시가 아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첫 확정적 견해로 규정했다. 또한, 세관장의 수정신고 안내 역시 가산세 경감 등을 돕기 위한 서비스적 성격의 ‘행정지도’일 뿐, 이를

FTA 사후적용 기한을 부활시키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서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목적 달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즉,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안내에 불과하므로, 납세자가 이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법령상 제한된 신청 기한을 복구시키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시각이다.

● 「품목분류 변경고시」와 세관장 행정지도의 구분 ●

구분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	단순 행정지도 및 사전심사 회신
법적 성격	관세당국의 기존 견해를 직권으로 뒤집는 공식적 고시 변경	세관장의 수정신고 권고(행정지도) 또는 특정 물품의 최초의 견해표명
귀책 사유	관세당국의 기존 유권해석 오류 등 관세당국에 책임 있음.	납세자의 단순 판단 착오 등 납세자 측의 귀책으로 간주
주요 특징	하급기관(세관장)을 기속해 대외적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	비권력적 작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서비스적 성격이 강함
FTA 사후적용	가능(1년 기한 예외 인정)	원칙적 불가(수입신고 후 1년 경과 시 권리 소멸)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 ‘엄격해석 원칙’이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비과세나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적 조치일수록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두11652 판결 등).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적 특혜이므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단순 수정신고까지 구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감면 요건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을 바탕으로, 행정지도와 법적 처분을 명확히 구분해 본 결정을 내렸다. 법령의 문언적 한계와 특혜 규정의 엄격성이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에 비춰 볼 때, 이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타당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일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결과대로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관장은 강제로 경정고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청구법인은 그때서야 경정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경정고지에 따른 가산세의 차액 납부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세관의 행정지도(수정신고 안내)에 성실히 협조할수록 오히려

법적 권리(FTA 사후적용)를 상실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건의 결정례를 반추해 볼 때, 현행 「FTA관세특례법」상 FTA 사후적용 기한 특례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조세 협력이 오히려 권리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의 성실 협력을 저해하고 자율심사 원칙을 훼손

「관세법」은 납세자의 자발적 수정신고를 권장하며, 이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2025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진 납세하려는 납세자에게 그 혜택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세관장의 '경정처분(강제 집행)' 시에만 1년 경과 후 사후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수정신고를 기피하고 세관장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버티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도한다. 이는 관세행정의 대원칙인 자율신고납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2) 행정지도에 따른 신뢰이익 침해 및 실무적 괴리 발생

세관장은 사후 세액심사 과정에서 수정신고를 안내하며 가산세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하지만 정작 이를 수용한 납세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한 FTA 사후적용이라는 더 큰 실익을 포기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세관의 행정지도가 납세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며, 이는 세관장의 안내를 신뢰한 납세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절차적 선택에 따른 조세 형평성 상실

동일한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적인 납세자는 FTA 혜택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불복하거나 방치해 경정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FTA 혜택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납세자의 협력 태도에 따라 최종 부담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5. 정책적 제언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성실히 협력한 경우에도 FTA 사후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FTA관세특례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추가)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품목분류가 매우 복잡해 납세자의 고의성이 없는 품목분류 착오임이 인정되고, 세관장이 이를 확인해 수정신고를 안내했다면 이를 경정처분에 준하는 절차로 간주해 FTA 사후적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FTA관세특례법」 개정(안) ●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생략)	① (생략)
②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중략> …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 <중략>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 <중략> …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세관장의 품목분류오류안내 등 행정지도에 따라 수입자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세관의 행정지도를 신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납세자에게 가산세 감면과 FTA 환급 혜택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조세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세관장의 안내에 따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제거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FTA 사후적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가 고의로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비효율적 관행과 불필요한 조세 마찰을 근절할 수 있다. 절차적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함으로써, 사후적용 신청을 둘러싼 불필요한 쟁송 비용을 절감하고 조세정의의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강력하게 유도함으로써 세관장의 사후심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자 자율준수 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자율심사 제도를 내실화해, 더욱 선진화된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VI. 맺는 말

본 사건은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자발적 수정신고가 오히려 FTA 사후적용이라는 권리 구제를 가로막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조세심판원은 「FTA관세특례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의 기한을 넘긴 사후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은 성실한 납세자가 세관장의 행정지도에 협조할수록 FTA 혜택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세관의 강제 처분을 기다린 납세자는 구제받는 형평성의 왜곡을 초래한다.

결국 현행 제도는 납세자의 자발적 오류 수정을 독려하는 수정신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행정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희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론적으로는 세관장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성실히 협력한 경우에도 FTA 사후적용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납세자의 성실한 조세협력이 법적 불이익이 아닌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다래나무를 건조해 만든 고양이 장난감, 조물재료일까?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개다래나무(출처: 국립생물자원관)

개다래나무(학명: *Actinidia polygama*)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다래나무과의 덩굴식물로 일본어로는 ‘마타타비’라고 한다.

고양이들이 개다래 나무에 행복해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액티니딘(Actinidine)이라는 성분에 반응하는 것이다. 나뭇가지나 잎을 던져주면 그야말로 안고 빨고 굴러다니지만, 정말로 마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신체에 무해한 식물로 중독성도 없으며 너무 자주 접하면 반응이 약해지기도 한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고양이잇과의 모든 동물이 개다래나무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개다래나무와 열매를 말려 스틱형으로 만든 고양이 장난감으로 ‘그 밖의 조물제품’에 해당하는 제4602.12-0000호로 신고했다.

제4602호에 해당하는 조물재료는 제46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 제46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조물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

플레이팅(plaiting)은 짚을 엮어 직물을 만드는 제조방식이며, 인터레이싱(interlacing)은 서로 교차시키고 맞물리도록 하는 제조방식을 말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조물재료’란 단순히 식물성 재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엮기, 짜기, 편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해 물품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준비된 재료를 의미한다. 단순한 식물의 가지나 목질부가 모두 조물재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무 자체를 절단해 말린 스틱형의 본 물품은 조물재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나무껍질·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powder)로 한 것·비벼서 뭉개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tea)’]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개다래나무의 줄기와 열매를 건조해 스틱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F RATTAN	4602.12-0000 (FCN1 1.6%)	Silver vine, dried	1211.90-1999 (FCN1 8%)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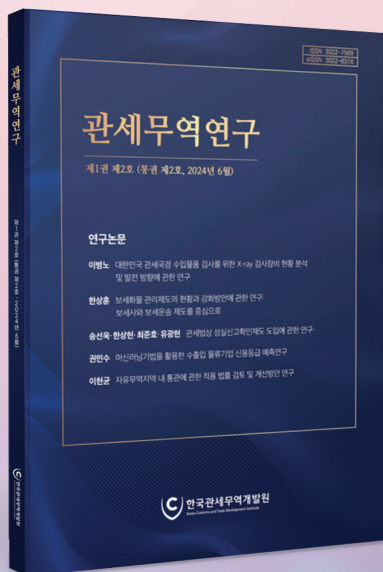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